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·지원 조례안

[김은영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2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3. 27.

발의의원 : 김은영 의원, 신달호 의원,  
최재규 의원

## 1. 제안이유

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)
- 나. 군수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다.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·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4조)
- 라. 기본계획 수립 등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(안 제5조~제6조)
- 마. 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(안 제7조~제8조)
- 바. 청년농업인 우대에 관하여 규정(안 제9조)
- 사. 중복지원 제한, 지원금 환수,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~제12조)

## 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## 4. 관계법령 : 「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·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후계농업경영인”이란 농업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3. “농업경영체”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다.
4. “후계농업경영인단체”란 후계농업경영인이 설립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군수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(이하 “후계농업경영인 등”이라 한다)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농업·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함으

로써 농업·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,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·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**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·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
2.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
3.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관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등과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실태조사)**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사업)**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
2.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
3.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

4.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·가공·판로확대
5. 그 밖에 농업 생산활동으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·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관,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영농기술·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·경영 컨설팅
2. 청년 농업인 고용
3.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8조(단체에 대한 지원)**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2.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9조(청년농업인 우대)**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후계농업경영인 등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.

**제10조(중복지원 제한)**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.

제11조(지원금 환수)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
2.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3.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4.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
5.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에 따른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때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